#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24-39

제출년월일: 2024.3.

제 출 자: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## 1. 제안이유

개정된 국민 제안 규정 사항을 반영 및 사용 용어를 변경하고, 실제 마포구 제안심사위원회 운영현황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조례를 합리적으로 관리· 운영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제안자 구체화를 통한 용어 정비(안 제1조~제4조)
- 나. 국민 제안 규정 개정에 따른 용어 수정(안 제15조)
- 다. 제안등급의 일관성 도모(안 제23조)
- 라. 맞춤법에 따른 정비(안 제 27조)
- 마. 마일리지 부여 관련 별표 추가 및 삭제(안 별표 제3조)
- 바. 별지서식 추가(안 별지 제1호서식)

## 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「지방공무원법」제78조
- 2) 「국민 제안 규정」
- 3) 「공무원 제안 규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라. 규제여부 : 해당사항 없음

마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 : 2024. 2. 29. ~ 3. 20. (제출된 의견 없음)

2)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 동의

3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
4)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: 개선사항 없음

5) 제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 심의회 원안의결(2024. 3. 26.)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서울특별시 마포구민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공무원의 제안을 구정에 반영하여 구정"을 "구정"으로 한다.

제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"마포구민(이하 "구민""을 "마포구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원하는 사람(이하 "주민 등"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"구민"을 "주민 등"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"구민"을 각각 "주민 등"으로 한다.

제13조제2항 중 "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"를 "공무원으로 한다"로 한다.

제15조제1호 중 "심신장애로 인하여"를 "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"으로 한다. 제20조제1항 중 "재심사를"을 "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여 재심사를"로 한다.

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제1항의 제안등급 중 금상·은상·동상·장려상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기 구청장 표창(상장) 및 부상을 수여한다.
- ③ 제1항의 제안등급 중 노력상을 부여받은 제안자에게 부상을 수여한다. 제23조제2항 중 "노력제안"을 "노력상"으로 한다.

제27조제1항 중 "구청장표창"을 "구청장 표창"으로 한다.

별표 1, 별표 2, 별표 3, 별표 4는 별지와 같이한다.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행정절차	제1조(목적)
법」제52조의2 및「지방공무원법」제78	
조에 따라 <u>서울특별시 마포구민과</u>	<u>구정</u>
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공무원의	
제안을 구정에 반영하여 구정 발	
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	
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	
목적으로 한다.	
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	제3조(용어의 정의)
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	
호와 같다.	<u>.</u>
1. "제안"이란 서울특별시 <u>마포</u>	1 <u>마포구</u>
<u>구민(이하 "구민"</u> 이라 한다) 또는	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원
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공무원	<u>하는 사람(이하 "주민 등"</u>
(이하 "공무원"이라 한다)이 서울	
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	
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는 행정제	
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	
제출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	
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	
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.	
가. ~ 사. (생 략)	가. ~ 사. (현행과 같음)
2. · 3. (생 략)	2.・3. (현행과 같음)
4. "공모제안"이란 구청장이 과	4
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	
는 경우에 <u>구민</u> 과 공무원이 제출	<u>주민 등</u>
하는 제안을 말한다.	
5.・6. (생략)	5.・6. (현행과 같음)

제4조(제안의 제출) ① <u>구민</u>과 공 무원은 구청장에게 단독 또는 공 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.

② 제안을 제출하려는 <u>구민</u>과 공무원은 구정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, 개선 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 을 작성하여 방문·우편·팩스 또 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청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#### ③ • ④ (생 략)

제13조(간사 및 서기) ① (생 략)

② 간사는 제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, 서기는 제안업 무를 담당하는 <u>공무원 중에서 위</u> 원장이 지명한다.

제15조(위원의 해촉)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<u>심신장애로 인하여</u> 직무를 수 행할 수 없게 된 경우

## 2. ~ 5. (생략)

제20조(재심사)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 하였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

② 주민 등-
<u> </u>
③·④ (현행과 같음)
제13조(간사 및 서기) ① (현행과
같음)
(2)
₩.
<u>공무원으로 한다</u> .
제15조(위원의 해촉)
세13소(귀전의 애낙)
•
1.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
- (-1-2) 1 1 1
2. ~ 5. (현행과 같음)
제20조(재심사) ①

제4주(제안의 제축) ① 주민 등-

에게 <u>재심사를</u> 요청할 수 있으며, 재심사가 요청된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9조 제1항을 준용하다.

#### ② (생략)

제21조(제안의 등급) ① (생 략)

② 제1항의 제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구청장 표 창(상장) 및 부상을 수여하며, 그 표창에 대한 공적심사는 위원회에서 심의한다.

### <신 설>

제23조(부상금의 지급) ① (생 략)

② 위원회는 별표 2에 따라 별 표 1의 <u>노력제안</u>을 선정하고 격려 품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27조(창의마일리지 시상) ① 구 청장은 창의마일리지 점수가 우수 한 공무원 및 부서에 대하여 <u>구청</u> <u>장표창</u>(상장)과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・③ (생략)

별지_	제1호서식을	제출하여	재심
<u>사를</u>			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1조(제안의 등급) ① (현행과 같음)

- ② 제1항의 제안등급 중 금상· 은상·동상·장려상을 부여받은 제안자에게 구청장 표창(상장) 및 부상을 수여한다.
- ③ 제1항의 제안등급 중 노력상 을 부여받은 제안자에게 부상을 수여한다.

제23조(부상금의 지급) ① (현행 과 같음)

- ② --------- <u>노력상</u>-----
  - 제27조(창의마일리지 시상) ① ------- 구청

<u>장 표창</u>-----

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#### [별표1]

#### 부상금의 지급(제23조 관련)

연 번	상 급	부상금 및 격려품	
1	금 상	100만원	
2	은 상	60만원	
3	동 상	30만원	
4	장려상	10만원	
5	노력제안	5만원 상당 격려품(문화상품권 등)	

#### [별표2]

#### 노력제안 선정 기준(제23조 관련)

대 상	실무위원회 심사결과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
선정기준	현시점에서 채택하여 시행하기는 어려우나 창의적이며 구정발전을 위한 노력이 돋보이는 안건
선정방법	위원회 의결
지급범위	위원회 개최 1회당 20건 이내
지급방법	본인 및 대리인의 방문 수령 또는 우편에 의
	한 등기수령, SNS 지급 등

#### [별표3]

## 창의마일리지제 종류에 따른 운영방법(제26조 관련)

구 분	운영방법
마포구 소속 공무원 및 부서 (동주민센터 포함)	1. 마일리지 부여방법(기준): 공무원 및 부서별 마일리지 배점표에 따라 부여 ※ 마일리지 배점표는 구청장 방침에 따름 2. 마일리지 관리 및 동점자(부서) 처리 가. 공무원별, 부서별 구분 관리 나. 동점자(부서) 우선 순위 1) 창의과제 발굴 분야 고득점자 2) 창의활동 분야 고득점자 3) 창의교육 분야 고득점자
그 밖에 각종 창의제안 제출 및 창의활동에 참여한 사람	1. 마일리지 부여방법(기준): 개인 마일리지 배점표에 따라 부여 ※ 마일리지 배점표는 구청장 방침에 따름 2. 마일리지 관리 및 동점자 처리 가. 개인별 점수부여 및 관리 나. 동점자 우선 순위 1) 단순 민원성 제안보다 '우수창의 제안'제출한 사람 2) 제안 제출 건수가 높은 사람 (같을 경우 전년도 포함)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# [별표1]

#### 부상금의 지급(제23조 관련)

연 번	상 급	부상금 및 격려품
1	금 상	100만원
2	은 상	60만원
3	동 상	30만원
4	장려상	10만원
5	노력상	5만원 상당 격려품(문화상품권 등)

#### [별표2]

### 노력상 선정 기준(제23조 관련)

대 상	실무위원회 심사결과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
선정기준	현시점에서 채탁하여 시행하기는 어려우나 창의적이며 구정발전을 위한 노력이 돋보이는 안건
선정방법	위원회 의결
지급범위	위원회 개최 1회당 20건 이내
지급방법	본인 및 대리인의 방문 수령 또는 우편에 의
, , , ,	한 등기수령, SNS 지급 등

#### [별표3]

## 창의마일리지제 종류에 따른 운영방법(제26조 관련)

구 분	운영방법
마포구 소속 공무원 및 부서 (동주민센터 포함)	1. 마일리지 부여방법(기준) : 공무원 및 부서별 마일리지 배점표에 따라 부여 ※ 마일리지 배점표는 구청장 방침에 따름 2. 마일리지 관리 및 동점자(부서) 처리 가. 공무원별, 부서별 구분 관리 나. 동점자(부서) 우선 순위 1) 창의과제 발굴 분야 고득점자 2) 창의활동 분야 고득점자 3) 창의학습 분야 고득점자 4) 창의실행 분야 고득점자

#### [별표4]

#### 창의마일리지 우수자에 대한 시상금 지급기준표(제27조 관련)

구 분	시상 등급	시상금	비고
개인 (구민, <mark>공무원</mark> )	최우수 우 수 장 려 노 력	20만원 ~ 30만원(상품권) 10만원 ~ 20만원(상품권) 5만원 ~ 10만원(상품권) 3만원 ~ 5만원(상품권)	상장 " "
부서 (과/동)	최우수 우 수 장 려	30만원 ~ 50만원 20만원 ~ 30만원 10만원 ~ 20만원	상장 "

※ 시상 인원수, 시상등급, 시상금 및 그 외 세부운영 규정은 구청장 방침에 따르며, 기 수상자는 같은 연도에 한하여 선정 제외한다.

#### [별지1]

#### [별표4]

#### 창의마일리지 우수자에 대한 시상금 지급기준표(제27조 관련)

구 분	시상 등급	시상금	비고
개인 ( <mark>공무원</mark> )	우 수 장 려	20만원 ~ 30만원(상품권) 10만원 ~ 20만원(상품권) 5만원 ~ 10만원(상품권) 3만원 ~ 5만원(상품권)	상장 " "
부서 (과/동)	최우수 우 수 장 려	30만원 ~ 50만원 20만원 ~ 30만원 10만원 ~ 20만원	상장 "

※ 시상 인원수, 시상등급, 시상금 및 그 외 세부운영 규정은 구청장 방침에 따르며, 기 수상자는 같은 연도에 한하여 선정 제외한다.

#### [별지1]

■ 서울특별시 마르구 제안제도 못몇 주어 [별지 제1호서식] 《신,설》

## 재심사 요청시 제안제목 실 사 결 과 를 고지받은 일자 접수번호 제안종류 주소 또는 소속 · 작급(직위) 성명 연락처 재심사 요청 사유 「서울특별시 아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」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심사

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.

년 월 일

제출자 : (서명 또는 인)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○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없음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12조

## 3. 미첨부 사유

○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## 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새마포담당관 김동우
연 락 처	02-3153-8535